

[일련번호 : 31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지출증빙서류 작성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동은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에 따라 예산 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2조(지출의 절차)제4항에 따르면 ‘각 과장은 동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,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, 물품 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동은 일상경비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그 증빙

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지출증빙 소홀 내역

연번	지출품의일	건명	지출금액 (원)	비고
1	2024-09-10	가족관계등록사무운영관련 구입비용 지출	1,006,500	물품검수조서 누락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예산 지출시 지출증빙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